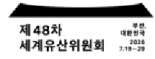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갈등을 중재·조정하여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이 필요한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한국부동산원 연구개발실 개발사업지원부(☎053-663-8629, k07894@reb.or.kr)

- 붙임 1.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명자료 1부.
2. 신청서(양식)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지사, 울산광역시, 충청남도지사, 경기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한국주택협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 대한건설협회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한국부동산원장

주무관

고은비

시설사무관

강윤빈

부동산투자제 전결 2026. 7. 2.

도과장

김계홍

협조자

시행 부동산투자제도과-1865

(2026. 7. 2.)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419

팩스번호 044-201-5538

/ eunbigogo@molit.go.kr

/ 비공개(5)

K-헤리티지 , 어제의 유산에서 내일의 자부심으로